

韓國 高等教育法令의 구조와 문제 분석연구

—大學의 自治와 管理運營을 중심으로—

- ◇ 이 研究論文은 韓國大學敎育協議會에서 1991년도 自體 ◇
- ◇ 研究의 일환으로 李鍾昇(忠南大·연구책임자) 교수 등에 ◇
- ◇ 의해 수행된 것이다. 紙面 關係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 ◇
- ◇ 지 못하고 目次 및 주요 부분만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1. 目 次

I. 序 論

1. 韓國 大學敎育의 問題
2. 改革의 課題
3. 대학교육 改革과 法令 整備
4. 本 研究의 目的과 內容

II. 高等教育 關係法令의 체계와 구조

III. 大學敎育 關係法令 검토의 準據

1. 大學敎育과 大學自治
2. 大學敎育 關係法令 검토의 準據

IV. 大學의 自治와 管理運營 構造

1. 大學의 管理運營 組織
2. 大學人事
 - 1) 總·學長의 選任方法
 - 2) 敎授任用제도
3. 大學財政

1) 國立大學

2) 私立大學

- ① 財政의 管理運營權
- ② 助成關聯制度
- ③ 租稅制度

4. 學事運營

- 1) 入學制度
- 2) 定員制度
- 3) 기타 學事運營

V. 大學自治의 課題와 法令整備의 方向

1. 大學自治의 課題와 展望
2. 大學敎育 關係法令 整備의 準據
3. 大學敎育 關係法令의 改正方向

〈附 錄〉

1. 韓國 高等教育 關係法令의 變遷過程
2. 日本의 學校法人 定款
3. 學校法人 와세다대학 교규(기부행위)

2. 大學自治의 課題와 法令整備의 方向

1) 大學自治의 課題와 展望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고유의 기능으로 하여 운영되는 학문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나 기본적 권리로서 학문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게 되며, 학문의 자유를 현실의 대학교육 제도 속에서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자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육과 연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敎授이다. 그러나 교수에 의한 대학의 자치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은 전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공적 행위이므로 국가가 설정한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일정한 敎育權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은 그들이 정한 설립 목적의 구현을 위한 일정한 설치·운영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동창생이나 지역사회 인사, 기업가들도 대학교육의 수월성이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일정한 의견 제시권이 있을 수 있다. 대학의 직원은 교육과 연구의 조건 정비자로서 대학교육에 대한 일정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중화된 오늘의 사회 속에서 대학은 그 운영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통하여 이 모든 요구를 끊임없이 수렴하고 자기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자치의 내용은 대학의 조직권, 인사권, 재정배분권, 시설·설비 운영권, 교육내용·방법의 결정권, 학생선발권, 정원책정 및 관리권, 각종 학사운영권 등을 들 수 있다. 현행의 대학교육 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대학자치의 내용을 이루는 이들 권한을 관할청, 학교법인, 대학교육 기관에 분산·배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할청과 학교법인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교육 기관은 그러한 권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자문하거나 집행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 대학교육 기관이 이렇듯 피동적이며 종속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창조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은 지금 커다란 변혁기에 처해 있다. 또한 변혁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학이라고 하는 종래의 상아탑적 역할과 권위는 점차 무너져 가고 있으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대학은 지난 '80년대를 통하여 이미 대중화 시대에 들어섰으며, 세계의 급격한 기술문명의 발전에 따라 국제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대학의 대중화는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기존의 교육·연구 체제에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정부나 학교법인이 폐쇄적으로 가져 왔던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와 권한은 이제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대학이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수가 전통적으로 누리왔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일방적 특권도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 모든 학술정보는 누구에게나 시시각각 공개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국제화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각 연구기관에서도 일반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지난 '60년대나 '70년대와 같이 더이상 고급인력을 배출할 능력을 잃고 있다. 학생들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대학 운영체제 하에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기를 원한다. 기업은 보다 세롭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를 원한다.

이제 대학은 대학자치의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 운영체제의 정립과 함께 변모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교육·연구 체제를 일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은 대학운영의 민주적 질서 확립과 공개운영 체제, 대학교육의 국제화로 제시되고 있다.

2) 大學敎育 關係法令 整備의 準據

이상과 같이 대학교육의 발전을 전망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법령의 정비는 대학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의 제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 학문연구와 진리탐구 기능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정비인 것이다. 따라서 양적으로 증가한 학생대

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소비자이며 납세자인 사회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의 수월성·자율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① 大學教育 關係法令의 檢討準據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안정성 그리고 체계성이 그 준거가 되어야 한다.

가. 교육법제가 規範的 측면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등 교육조항의 정신에 적합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전문성 등의 확보 정도가 그 준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관계구조에서 당사자인 교수, 학생, 학부모,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보장의 조화 정도가 또한 타당성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화·민주화 사회의 다원주의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자율성·다양성·효율성의 제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의 社會的 義務性과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이 학문연구와 교육·사회적 봉사의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아울러 공공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법의 實效性을 위하여 입법에서의 소관사항의 원리, 특별법 우선의 원리, 후법우선의 원리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의 강요적·조성적 측면의 형식을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

다. 실정법이 탄력적인 안정성을 갖고 해석·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법질서의 목적과 진보의 동향과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

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있어서 개개 법률 및 규정 상호 간에 유기적 종합체를 형성하여 논리적으로 통일·정비해야 할 것이다.

② 大學自治의 理念 구현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과 한도 내에서 대학자치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학의 자치라는 핵심적 내용이 법률에 의해 침해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법률의 정비로 이를 보

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치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자율의 정도, 대학자치의 주체, 대학자치의 내용 등이 문제가 된다.

대학자치의 주체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교수회의 구성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학생의 지위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학자치에 학생의 참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견해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학자치의 내용은 교원인사의 자주 결정권, 교육 및 연구의 내용·방법·대상의 자주 결정권, 대학시설 관리의 자주 결정권, 재정자치권, 직원자치, 학생자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자치의 한계로는 학문적 활동과 이의 관련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치주의의 적용, 대학구내 및 대학의 연구·교육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나 상황의 한계 등이 있다. 또한 대학자치를 헌법상의 제도보장으로 이해할 때 입법자는 법률의 형식으로 이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실현하여야 하며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③ 大學組織化의 基本原理

대학의 조직화는 대학교육의 창의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교육·연구 조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둘째, 행정·관리 조직은 교육·연구활동에 조력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한다. 셋째, 교육·연구 조직이 적극적으로 행정·관리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학생·행정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밖에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대학교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의 조직화 과정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大學教育 關係法令의 改正方向

현행 고등교육 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각종 법령의 문제점은 그것이 현실의 대학교육 제도 속에서 상호연관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령만을 개정하여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갈 수 없다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고등교육 관련법령의 법

적 장치는 대학운동을 둘러싸고 국가의 대학에 대한 公共性 구현권의 범위와 한계, 대학 설치권자(국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육 기관에 대한 설치·운영권의 범위와 한계, 대학교육 기관의 자치권·자율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명백히 설정하지 않고 국가·설치권자 등에 그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대학교육의 실질적 주체라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무시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고등교육 법령은 대학준립의 목적인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학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을 위한 과제를 기본적 검토과제와 분야별 검토과제로 나누어 요약·제시하고자 한다.

〈基本的 檢討課題〉

① 國家의 大學에 대한 指導監督權의 範圍와 限界 再定立

현행 고등교육 운영체제를 규정짓고 있는 각종 법령은 상당부분 국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규제사항들은 대학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통한 대학의 수월성 유지는 제도적·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교육부)가 행사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범위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현행 교육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통하여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선에서 국가의 공공성이 구현되도록 하며, 또한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정책기획 및 조성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 교육부 대학정책실의 기능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의 문부성 고등교육국의 관장부서를 참고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국의 기획관, 고등교육국의 시학관(장학관), 대학심의회실, 교육대학실, 대학입시실, 기술교육전문관, 대학병원지도실, 육성장학전문관, 학교법인조사

관, 시학조성기획관, 고등교육국의 시학위원, 학교법인 운영조사위원 등이다. 문부성의 조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 대학교육 정책이 대학에 대한 기획·장학·조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고등교육 관련법령을 통하여 상당부분 대학의 자율과 책임사항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② 國立大學의 特殊法人化(案) 檢討

국립대학은 현재 대학의 조직, 인사·예산편성, 교육과정 운영, 시설 운영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교육부와 총·학장을 개선으로 하는 수직적 행정조직이 대학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교에는 대학평의회가 조직되어 대학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역할·기능의 실제적인 단계에 들어가서는 각종 법령, 규칙 등에 의해 또 다시 제약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그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치를 구현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범위와 한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그 개정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이는 국립대학의 特殊法人化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수법인화의 핵심은 이사회의 신설을 통한 대학운영의 학내·외 개방, 대학평의회의 역할·기능 재정립을 통한 대학의 자치권 회복과 공개적인 운영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 중 학교의 설·폐권, 가장 기본적인 학사운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의 자치와 자율권한 사항으로 위임하고 이사회와 대학평의회가 각자의 선출모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③ 學校法人 理事會와 大學教育機關의 役割·機能 再定立

현행 교육관계 법령과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관할청, 학교법인, 대학 교육 기관의 권한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국가(관할청)는 교육이 국가의 公器로서 전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사명을 지닌 것이므로, 그 공공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기제로서 법을 제정하고 법의 집행에 따르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학교법인도 대학의 설치자로서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권을 갖고 있다. 대학교육 기관은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실제적인 수행자로서, 그 기능의 구현을 위한 수단적 장치로서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自治를 요구하게 된다.

이 3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自治權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 대학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체제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육 기관에 대해 설치·운영권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현방식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를 포함한 대학교육 기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 연구를 통한 학문창조의 산실인 대학은 그 수단으로서의 대학의 자치체도를 보장받음에 따라 그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자주성은 학교법인과 대학교육 기관이 상호 일체화된 자주성이 되어야 한다. 그속에서 학교법인이 담당할 사항과 대학교육 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고 상호 권한과 책임을 나누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 구성, 역할·기능,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구성과 역할·기능 등에 있어서 국가의 공공성 구현권, 학교법인의 설치·운영권, 대학의 자치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화를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分野別 檢討課題〉

① 大學組織

대학의 조직은 기본 운영조직으로서 교육·연구 조직인 학과·학부, 대학원·연구소, 도서관,

관리·운영 조직으로는 이사회, 평의회, 자치조직으로는 교수회, 학생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총·학장을 정점으로 하는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재무처 등은 관리·운영 조직이라기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수행을 위한 관리·행정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의 기본 운영조직과 관리·운영 조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ㄱ. 기본 운영조직

· 단과대와 종합대의 구분 철폐

현행 단과대와 종합대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인 요소들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교육법 제109조의 단과대와 종합대의 구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과조직의 개혁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학과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그 방향은 현행 교육법 및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과조직을 대학이 자신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개편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혁신, 연구조직의 개편, 대학원 체제의 개편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ㄴ. 관리·운영 조직

가. 학교법인 이사회

·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은 그 구성의 공공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처럼 학교의 설립자나 친·인척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그 선출모체의 배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한 대학 또는 관련 교육기관의 장(대학교육 기관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선출)¹⁾: 당연직 이사는 단체·지역

1)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명백히 설정된 규정에 의해 학내·외의 유력인사를 추천하는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교수·학생·사무직원 등이 교육과 연구의 장에서 그들이 각각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의 위상을 정립하여 일정 선출권의 배분비율을 선정하거나, 선출 절차상에 있어서 일정한 참여방식을 선정하거나 혹은 총장 선출과정이 아니라 학내의 각종 위원회에 학생·사무직원이 그들의 교육과 연구의 장에

사회 인사

-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설립과 관련있는 자 또는 관련단체)
- 평의원 중에서 대학평의원에서 선출한 자(평의원 중 동창회에서 선임한 자 포함)

이사회는 해당 대학에서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선출모체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의 개방성과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구성과 비율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은 학교법인 내부의 운영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육 기관의 운영은 대학의 자치권에 터하여 대학에 위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교법인의 설립이념에 의한 대학의 설치·운영권은 대학평의회에의 참가를 통하여 그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대학평의회

- 대학평의회의 조직은 학교법인 이사회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아래 민주적으로 선출·구성되어야 하며, 설치는 학교법인에 두도록 한다. 평의회의 조직·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학평의회 평의원을 제외한 이사 전원
- 법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선출된 자
- 동창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된 자
- 기타

- 대학평의회의 조직에 있어서도 그 선출모체의 설정·비율 등은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평의원의 수는 대체로 이사 수의 2배가 적정하리라고 생각되며, 그 기능과 역할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견제·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짜여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학교법인과 대학교육 기관이 대학의

공동주체라는 관점에서 이사회와 평의회 조직·구성에 관해서만 그 개편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실제 사립대학의 관리·운영의 주체인 이사회와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세부적인 역할 기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장 직선제라든가 평교수회, 교수협의회 등에 의한 교수회의 자치문제 등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이라든가 대학평의회의 선출 구성·역할·기능 등의 제도적 정립을 통해서 수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국·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의 관리·운영 조직, 즉 이사회와 대학평의회의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성 구현권, 학교법인의 설치·운영권, 대학교육 기관의 자치권이 교육법령이나 사립학교법 등에서 합리적으로 장치되어야 할 것이다.²⁾

② 大學人事

7. 대학자치의 핵심은 교원인사의 자주적 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국·사립대학 모두 관계법에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교수회의 권한사항으로 총·학장의 선출권을 포함한 교원인사와 학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국·공립대학의 총·학장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칙에 규정할 사항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사립대학에 있어서 사립학교 설치·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헌법적 자유에 대해 대학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경영권에 대한 교학권 우위의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관계 규정이 정비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라. 종합대학의 학장과 학과장 선임에는 총장과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

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여 참여영역을 구분하여 참여방식을 설정, 대학운영에 동참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선거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2) 이러한 논의에는 권말부록에 실은 일본 사립대학의 기부행위(학교법인 정관 준칙)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대학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본법·학교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을 작성, 문부성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등이 학칙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ㄱ. 교원의 신규임용 절차는 당해 학과에서 신규채용을 심의·결정하고 최종 임용은 총(학)장의 권한으로 하여야 한다.

ㄴ. 대학교원의 임기제(제임용제)는 원칙적으로 진단 폐지하거나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③ 大學財政

ㄱ. 국립대학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예산회계법 및 관련법령은 별도의 국립대학 예산·회계법 제정이나, 현재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소되는 사항은 학교법인=대학교육 기관의 권한 사항으로 대폭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이때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체제로서 이사회와 대학평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구성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장치에 의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ㄹ. 현행 사학지원법(사립학교법 및 관련법)에는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체계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ㄱ. 현재 국가의 사학조성 규모가 극히 미약함에 비추어, 사립대학의 제정난 해소를 위한 조성적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관련세법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④ 學事運營

ㄱ. 입학제도

· 고교교육의 정상화는 단순히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이를 강제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서가 아니라, 고교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교과목을 통·폐합 또는 신설하며, 동시에 교수·학습방법, 교육운영체제 등의 개편도 병행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인간교육, 국가사회에 소속하는 시민교육, 전문교육을 통한 미래사회의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내신성적 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고교차원에서 독자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반영하는가는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에서 대학의 자율권한 사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대학입학 자격에 관한 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입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여야 한다.

· 대학차원에서는 자체의 관리·운영 체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의 자율화는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입시제도가 그 불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ㄴ. 정원제도

· 국립대학의 정원정책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수월성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방향은 사립대학이 부담하기 어려운 첨단 미개척 분야의 전공, 국제화에 대비하는 지역연구, 대학내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제정을 부담하는 국립대학의 정원 책정권은 1차적으로 국가가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원의 책정과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위상을 지닌 대학교육심의회와 같은 중간기구가 심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립대학의 정원책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의 자율권한 사항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의 수월성 유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설치기준령,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 대학입학자격기준, 교수자격인정령, 대학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공공적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정원을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ㄷ. 기타 학사운영

학사운영에 관한 현행 교육법 시행령상의 제 규정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률은 의회입법에 의해 제정되도록 한다. ■